

3. 建設業法施行令中改正令

大統領令 第13,916號 1993. 6. 26

건설업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4천만원미만”을 “6천만원미만”으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사의 도급한도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1건의 공사마다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

1. 예산회계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2. 하나의 건축물·교량·터널·댐등의 공사에 관한 계약을 분할하여 동일 인과 체결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

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나. 가목외의 발주자가 발주하는 경우로서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다. 하도급공사의 경우로서 별표1의 건설공사의 내용별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 제2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하도급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중 수급인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
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
우 또는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3의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
허수첩에의 도급한도액 및 도급금액
하한액의 기재

대통령령 제13789호 건설업법시행령증

개정령의 부칙단서중 “1993년 7월
1일부터”를 “1994년 7월 1일부터”
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대통령령 제13789호 부칙의 개정에
따른 신고특례) 이 영 시행당시 토목건
축공사사업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기준금의 변경에 관한
신고기한이후에 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도급한도액기준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에 불구하고 이를
1993년 6월 29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 개정이유 □

건설공사 발주자의 편의도모와 중소건설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건설업법적용대상에
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넓히고,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
사의 공사금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의 적용방법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개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행규정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2천만원미만인 공사에서 3천만원미만인 공사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백만원미만인 공사에서 7백만원미만인 공사로 각각 조정함(령 제4조제1항).
- 나.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의 규모를 공사금액 4천만원미만인 공사에서 6천만원미만인 공사로 상향조정함(령 제18조제2항).
- 다. 건설공사의 도급한도액은 1건의 공사계약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물·교량·터널·램공사등에서와 같이 동일구조물공사를 여러번에 나누어 동일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하도록 함(령 제22조제2항).
-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반드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하도급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하도급질서를 확립하도록 함(령 제33조의2제4항).
- 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령 제35조제1항제3호).
- 바. 토목건축공사자의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하여 적용하기로 한 개정규정은 기술인력의 확보등 건설업자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줄 수 있도록 이를 1년간 연기하여 199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대통령령 제13789호 부칙).

<법제처 제공>